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27

발의연월일: 2021. 1. 15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병원 · 기동민

이해식 · 김수흥 · 문진석

안호영 · 이용빈 · 인재근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,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(看做)하는 제도를 도입함(안 제4조제3항ㆍ제4항, 제12조제4항ㆍ제5항,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).
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 따른"을 "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- ③ 조합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,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8항"을 "제10항"으로 한다.

④ 시장·군수는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⑤ 시장·군수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제14조제2항 후단 중 "제12조제4항"을 "제12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 - ③ 시장·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제17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작신고) ① ~ ② (생	제4조(경작신고) ① ~ ② (현행과
략)	같음)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조합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
	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
	에,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
	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
	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
	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
	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④ 조합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
	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
	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
	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
	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
	<u>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</u>
	<u>것으로 본다.</u>
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	<u>⑤</u>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	<u> 따른</u>
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	
제12조(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	제12조(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
류 제조의 신고 등) ① ~ ③	류 제조의 신고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시장·군수는 제1항 본문 또

<신 설>

- ④ (생략)
-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「식품위생 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.
- ⑥ 시장·군수는 <u>제4항</u>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 른 식품의 제조·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.
- <u>⑦・⑧</u> (생 략)

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		
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		
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		
<u>한다.</u>		
⑤ 시장・군수가 제4항에서 정		
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		
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		
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		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		
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		
리한 것으로 본다.		
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		
<u> ⑦</u> 제6항		
<u> ⑧ 제6항</u>		
<u>⑨</u> ・ <u>⑩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		

같음)

- ⑨ <u>제8항</u>에 따라 시장·군수에 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 다.
- 제14조(영업자의 지위승계 등) ① 저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· 가공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함 께 신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 </u>
세14조(영업자의 지위승계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제12조제6항</u>
<u>.</u>
③ 시장・군수는 제2항에 따른
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
통지하여야 한다.
④ 시장·군수가 제3항에서 정
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
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
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
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
리한 것으로 본다.

③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7조의2(자체검사업체의 지정	제17조의2(자체검사업체의 지정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
	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
	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
	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
	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
	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
	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
	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
	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
	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